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 1) 치유농업사 2차 시험방식을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간소화함(안 제6조제2항).
- 2)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 기준을 ‘횟수’로 설정함(안 제6조제4항)
- 3)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에서 2급 치유농업사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의 미비점을 보완함(별표1)
-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권한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함(안 제12조제2항)
- 3)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을 “단답형 및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인증된 우수 치유농업시설이 제1항의 인증 기준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점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세부기준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법 제18조”를 “법 제20조”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응시자격

자격등급	응시자격
가. 1급 치유농업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시설, 국·공립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관리, 치유농업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차)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나.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치유농업관련업무의 경력 산정방법, 관련 학과 등 자격 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5(중전의 별표 4) 제2호 다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30	60	100
---	------------	----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제11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경영	운영계획서	계획서 적정성	-운영 방침 및 철학 -중장기 목표 -운영 목표 및 실행계획 -치유농업자원 및 인력 확보 방안
	고객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반영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보유
		고객권리	-참여자 권리 및 폭력 예방 교육 이수
	네트워크	지원기관 네트워크	-치유농업 관련 행정 지원을 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일반행정기관과 협력 및 연계 활동 여부
	경영관리	회계	-회계 전산프로그램/회계장부 사용
		계약 관리체계	-계약서 항목의 적정성
			-계약서 작성 관리체계
인적 자원	인력관리	전문성	-치유농업 이해도 -고객 응대 역량 -프로그램 시연 역량
		직무명세서	-대표자/담당자별 직무 구분 및 세부 업무
		이력관리	-대표자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수, 강의 등 이력 관리
		적정인력	-제공 프로그램 대비 적정인력 보유 -운영 인력 1인이 담당하는 1일 평균 고객 수
		직원교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범죄이력	-범죄경력 회보 서약서
	기본자격	교육 이수증/자격증	※다음 4개 기준 중 1개 충족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증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 이수 증명서 -치유농업사 자격증 -대학(원)과정 치유농업 필수교과목 이수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목적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치유 목적 설정
		프로그램 구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회기, 소요 시간, 장소 설정 -보유한 자원(치유농업 자원, 인력, 장소) 분석 및 활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설명 -프로그램 목적과 단위활동 목표의 연계성 -단위 활동 간 자원 활용, 활동 내용, 치유 중재의 연계성
	효과평가	평가도구 선정 및 평가 방법	-적절한 평가도구와 분석 방법 사용
		결과분석	-평가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운영평가	프로그램 운영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이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는지 평가
시설·환경	치유농업 자원관리	식물/동물/곤충/기타자원	-생산공간과 치유공간 분리 -치유농업자원별 관리 적정성 -자원과 치유농업시설의 조화
	장비 관리	서비스 제공 장비	-장비/도구 위생관리, 정상 작동 여부 -적정 수량 및 점검일지 작성 관리
	시설구축 및 관리	실외시설	-수용가능 규모(활동공간 150㎡ 이상)
		실내시설	-수용가능 규모(80㎡ 이상) -서비스 공간과 휴게 공간 분리
		편의시설	-남녀 구분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안전설비 및 관리	안전관리	-안전 위생관리 매뉴얼 적정성
		안전장비	-소화기 -구급약품 -개인보호장비 구비
		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법규 준수	법규준수 서약	-관련 법규준수 서약서
		건축법 준수	-건축물대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생략)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차시험: <u>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u>	2. ----- <u>단답형 및 서술형</u> <u>을 혼합한 주관식</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등급에 따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시행되는 제1차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제6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⑧ ----- 제7항-----

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인증된 우수 치유농업시설이 제1항의 인증 기준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세부기준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법 제18조제1항-----

-----.

② ----- 법 제18조제2항-----

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2. (생 략) <u><신 설></u>	----- ----- ---.
<u>제12조</u> (생 략) <u>제13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18조</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4</u>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 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u> <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u>제14조</u>(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20조</u>----- -- <u>별표 5</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연 락 처	(063) 238 - 1081